

물품구매사양서(가규격)

□ 전 명 : 스티커 라벨(외포장용)

□ 적용범위

- 본 사양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스티커 라벨(외포장용) 구매에 적용합니다.
-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의해서 적용합니다.

□ 납품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1) 품질규격

항 목		품질 규격		비 고
라벨지	재질	유포지		-
	색상	백색 노란색(PANTONE Yellow C) 주황색(PANTONE 1495C) 분홍색(PANTONE 1775C)		-
	크기	가로	100±1 (mm)	-
		세로	120±1 (mm)	-
	두께 (접착제 포함)	100±5 (μm)		-
	라벨지 간격	3±0.3 (mm)		-
	접착제 종류	핫멜트		-
	점착력	4.0 (N/10mm) 이상		· KS T 1028 시험법 적용
	잉크	· 내광 잉크 사용 · 촉진내후성시험 100시간 실시하여 색차(ΔE) 1.5 이하여야 함.		· KS M ISO 4892-3 시험법 적용
이형지	두께	52±5 (μm)		-
	평량	65±5 (g/m²)		-
1롤 수량		3,000매		-
지관 내경		76.5±0.5 (mm)		-
기타 사항		□ 부착된 라벨은 외부 환경(비, 바람 등)에 의해 파손, 탈착, 변색이 되어서는 안된다. □ 부착된 라벨의 인쇄된 정보는 외부 환경(비, 바람 등)에 의해 지워져서는 안된다. □ 스티커 부착 설비에 장착 및 박리가 원활해야한다. □ 핫멜트 점착이 설비에 묻어나와 설비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. □ 연속 동작 중 라벨(이형지)이 끊어져서는 안된다.		

2) 기타사항

-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
- 자재 납품 시 생산 Lot별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) 납품장소

-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-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원부자재창고입니다.

- **납품방법** : 본 자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수시 납품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한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.
- **검사방법** :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은 발주처의 자가품질검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합니다.
- 기타 본 구매사양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, 납품 후 자재의 품질 이상으로 설비가동에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
물품구매사양서(가규격)

□ 전 명 : 스티커 리본(외포장용)

□ 적용범위

- 본 사양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스티커 리본(외포장용) 구매에 적용합니다.
-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의해서 적용합니다.

□ 납품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1) 품질규격

항 목	품질규격(사양)
열전사 프린터	제조사 : Datamax
사양	모델명 : A-4310
Type	Resin
색상	검정색
폭	100 ± 2mm
길이	450m 이상
리본 두께	9μm 이하
필름 두께	4.5μm
기타사항	· 설비(열전사 프린터) 장착에 용이해야 하며, 사용 시 끊어짐이 없어야함 · 라벨에 인쇄된 정보는 판독(스캔장비, 육안확인)이 99.9%의 판독률이어야 함 · 고온(180℃ 이하)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함

2) 기타사항

- 자재 납품 시 생산 Lot별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) 납품장소

-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-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원부자재창고입니다.

□ 납품방법 : 본 자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수시 납품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한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.

□ 검사방법 :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은 발주처의 자가품질검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합니다.

□ 기타 본 구매사양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, 납품 후 자재의 품질 이상으로 설비가동에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
『스티커라벨 및 스티커리본』 물 품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

2021. 12.

제 주 특 별 자 치 도 개 발 공 사

제1조(목적) 이 특수조건(이하 “조건”이라 한다)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(이하 “개발공사”라 한다)가 시행하는 부자재(스티커라벨 및 스티커리본) 물품 구매 계약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**계약상대자**”란 물품 제조·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**계약담당자**”란 「개발공사 회계규정 제6조 제1항」에 따른 자를 말하며, 물품공급 감독, 대가의 직접 지급, 검사, 검수, 지체상금부과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한다.(그 위임을 받은 개발공사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3. “**검수**”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**검사**”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개발공사 품질규격대로 제조 및 납품 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**현장점검**”이란 계약담당자가 제조현장, 물품보관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공사 점검 기준에 따라 품질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.
6. “**단가계약**”이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.

제3조(계약의 내용) ①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의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정량으로 실제 납품은 개발공사 생산계획에 따라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 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계약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청구하며, 계약금액의 증감 사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조정한다.

③ 계약기간은 물품계약서, 발주물량과 납품 시기는 납품의뢰서에 따른다.

제4조(납품의뢰서) ① 계약기간 중 물품의 납품은 납품의뢰서에 따르며 납품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.

1. 발주요청일
2. 발주수량 및 납품기한
3.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
4. 그 외 기타 필요한 사항

② 개발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제작 납품이 가능하도록 최초 납품 의뢰서는 입고요구일 대비 14일 이전에 발급하며, 이후 납품의뢰서는 매월 납품일 7일 이전에 발급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납품의뢰서는 월 단위 납품의뢰서, 변경 납품의뢰서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일 7일 이전에 납품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납품방법)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의뢰서에 의거 요구 물량이 납품 기한 내에 입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자재 납품 시 생산 Lot별 자가품질검사 성적서(품질규격 항목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상대자는 운송과정 중 자재 오염방지, 쏠림현상 및 빗물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재 상단을 포함한 비닐 포장 및 밴딩 처리 후 납품하여야 하며, 외부 보관 시 이물질 등이 포장 내·외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.

④ 계약상대자는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물류업체에 운송중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⑤ 계약상대자는 운송업체의 차량 내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보완토록 한 후에 물품을 적재토록 하여야 한다.

⑥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제조일 및 수량, 규격 등의 내용을 명확히 표기 하여야 하며, 주의경고 표시 등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ex)

Lot No. <u>19</u> <u>10</u> <u>15</u> <u>001</u> 년 월 일 일련번호
--

⑦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청결한 플라스틱 팔레트(1100*1100*150)에 적재하여 납품하여야 하며, 팔레트에 의해 물품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, 물품 운송에 사용하는 팔레트(Pallet)에 관계되는 일체의 경비부담과 회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⑧ 납품물품은 반드시 선입·선출하여야 하며, 선입·선출 관리를 위한 기록물(보관물품 구획별 이력카드 또는 물품 수불대장 등)이 실제 물품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.

⑨ 계약상대자는 물품 상차와 동시에 개발공사가 운용중인 '원부자재 납품관리시스템'에 접속하여 '상차완료'를 등록하여야 한다.

제6조(검사·검수) ① 물품의 검사·검수는 개발공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, 물품구매사양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다. 다만,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검사·검수 방법에 이견이 있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개발공사는 검사·검수에 대한 결과를 물품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,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·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검사·검수가 완료되어 합격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의 하자로 인한 불량인 경우에는 불량으로 처리한다.

1. 발주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납품된 경우
2. 납품된 물품이 오손·훼손 등 하자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
3. 검사·검수 시 발견할 수 없는 품질의 하자 또는 설비적용 후 발생한 하자의 경우

제7조(불합격품의 처리) ① 제6조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은 개발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봉인한 후 보관하며,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한 물품 중 검사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반품처리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처리 할 수 없다.

1. 생산계획 변경·사양변경·판매부진·재고증가·보관 장소 부족에 의한 반품
2.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품 물품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을 하는 경우

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 중 물품규격이나 품질 등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반품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정상품과 즉시 교환을 하여야 한다.

⑤ 반품 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제8조(품질관리) ①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과 수량은 개발공사 물품구매사양서 및 사업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② 물품구매사양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.

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④ 납품 중인 물품의 제조 공정 또는 레시피 변경이 필요할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규격 검사 및 설비적용 테스트를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 후 납품하여야 한다.
- ⑤ 물품 보관 구역은 오염방지를 위한 보관환경 관리, 물품보호를 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이취 및 이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물품과의 혼용 보관을 금지한다.

제9조(현장점검) ① 현장점검은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후 개선 사항 발생 시 추가 점검을 할 수 있다.(단, 물품 보관창고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, 분기별 1회 이상 할 수 있다)

② 계약상대자는 개발공사의 제조공장(또는 물품보관창고) 점검 요청(제조공장 위생상태, 제조과정, 직접생산여부 등)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평가 항목은 붙임 1.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에 따른다.

③ 계약상대자는 개발공사의 제조공장(또는 물품보관창고) 현장방문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이 있을 시,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한다.

④ 현장점검결과는 평가에 반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“원부자재 사전품질검사제도 운영지침”에 따른다.

제10조(대가의 지급) ① 개발공사의 일괄마감제도 채택에 따라 매월 최종 입고일은 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의 기준일로 한다.

② 대금 지급은 기준일로부터 30일내에 지급한다.

③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「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(공정거래 위원회 고시)」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, 지연이자는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.

④ 대금 지급 진행에 따른 월 마감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와 마감수량, 금액, 단가 등을 서로 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금계산서
2. 대금청구서(또는 입금계좌지정서)
3. 지역개발공채
4.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 완납 증명서

제11조(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)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물가변동금액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,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, 내·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,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.

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개발공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하자 등 발생 시 조치사항) ① 계약 체결된 물품과 관련하여 납품 물품의 하자 발생 또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붙임 2. 조치사항 세부내역 과 같다.

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어려운 경우 생산 일정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물품 제조·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한다)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[물품계약 일반조건](이하 “일반조건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붙임 1.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

원·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

업 체 명 :
점검일자 : 년 월 일

평가 항목		평가 결과	비 고
일반사항	1. 품질, 식품안전, 환경 관련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	2. 제조공정, 원재료 등 변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 변경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고, 개발공사에 보고되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원료	3. 원재료의 대한 문서화된 규격이 있으며, 승인된 공급자 리스트가 존재하여 유효한가?	적합 / 부적합	
	4. 효과적인 입고검사 프로그램이 존재하며, 입고 자재들의 법적/자체 규격을 준수함을 보장하는가?	적합 / 부적합	
제조공정	5. 원재료 저장구역은 다음을 만족하는가? - 청결하고 외부물질 유입발생 위험이 없어야 함. - 원부자재는 선입선출되며 사용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어져야 함.	적합 / 부적합	
	6. 제조공정 및 완제품에 대해 설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 검사 시스템이 존재하며, 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	7. 검사장비는 검교정되고 성능점검이 행해지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	8. 중요공정관리점은 적합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으며, 샘플링 기준 및 시험절차가 유효한가?	적합 / 부적합	
	9. 규격이탈 조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, 규격 이탈 시 알람/조치 프로세스가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작업자	10. 방역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며 적절한 주기로 방역관리가 행해지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	11. 작업자는 다음을 만족하는가? - 배치 전 품질 및 위생교육 수료하였는가? - 작업 시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 및 시계, 장식구 등 착용 금지를 준수하는가?	적합 / 부적합	
저장	12. 완제품 저장구역은 청결하고 외부물질 유입 발생 위험이 없으며, 완제품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가? (화학적 및 완제품과 격리되어 보관 등)	적합 / 부적합	
	13. 완제품 저장구역내 모든 제품은 명확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인식가능한가? (제품명, LOT No., 생산일자 등)	적합 / 부적합	
출하	14. 완제품 출하 시 다음을 만족하고 있는가? - 완제품 출하 전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하. - 완제품은 선입선출되며 출하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고있음.	적합 / 부적합	
시정 및 예방조치	15. 내/외부 재원으로부터의(부적합사항, 불만사항, 고객불만사항) 모든 시정/예방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
점검자 소속 : 직위 : 성명 : 인

입회자 소속 : 직위 : 성명 : 인

원·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(보관창고)

업 체 명 :
점검일자 : 년 월 일

구 분		점검 내용	점검 결과	세부 내용
보관 환경	제품 보호	① 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		② 보관장소 내 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? (작업장 점검 Check List 등)	적합 / 부적합	
		③ 보관장소 내 제품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조류 및 곤충류 등이 관찰되는가?	적합 / 부적합	
	구획 관리	④ 제품은 일정 단위(Lot)로 구획을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		⑤ 각 구획간의 제품 및 벽면 등 충분히 이격하여 관리하고 있는가? (최소 1m 이상 통로 확보)	적합 / 부적합	
제품 관리	보호 조치	⑥ 보관장소 내 제품의 이송, 적재 등 방법은 적합한가?	적합 / 부적합	
		⑦ 당일 입출고를 제외한 보관제품에 덮개설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		⑧ 제품 외부포장에 오염이 관찰되는가? (먼지, 작동유, 조류 배설물 등)	적합 / 부적합	
		⑨ 제품 외부포장에 파손이 관찰되는가?	적합 / 부적합	
		⑩ 부적합 제품(파손 등)의 관리가 적합한가? (별도 구역 보관, 식별표시 등)	적합 / 부적합	
	지게차 관리	⑪ 제품 표면과 접촉하는 지게차에 대한 오염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	선입선출	⑫ 제품 선입선출 및 선입선출 관리를 위한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
⑬ 제품의 배치도면이 작성되어 배치현황과 일치되는가?		적합 / 부적합		
프로세스	⑭ 제품 입·출고 및 부적합 제품에 관한 추적·회수·처리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며, 적합한가?	적합 / 부적합		
보안관리	⑮ 보관장소 내 제품에 대한 적합한 보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	적합 / 부적합		

점검자 소속 : 직위 : 성명 : 인

입회자 소속 : 직위 : 성명 : 인

붙임 2. 조치사항 세부내역

구 분	발생 사항
1. 시정요구 (이메일)	가. 운송차량 위생상태 불량 나. 물품 외부 위생상태 불량 다. 이취 발생 예상 타 물품과의 혼적 라. 물품 Lot No. 미기입 마. 물품 외부(포장) 파손 바. 선입/선출 미이행 사. 물품 납품시 필요서류 내용 불일치(물품 수량, 거래명세서, 시험성적서) 아. 납품 요구일(D-day) + 2일 이상 자. 자료 제출 요구 기한 미준수 차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2. 주의 (문서)	가. 동일 사항 시정요구 2회 나. 물품 내부 파손 다. 샘플링 수입 검사 부적합 라. 설비 적용 후 발견된 품질 불량 마.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기한 미준수(구매사양서에 기술된 품목) 바.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미이행(제조공장 점검 Check List 포함) 사. 납품 요구일(D-day) + 3일 이상 아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3. 경고 (내용증명)	가. 동일 사항 시정요구 3회 나. 동일 사항 주의 2회 다. 납품 요구일(D-day) + 4일 이상 라. 설비 적용 후 발생된 품질 하자로 인한 생산 차질 또는 판매 부적합품 발생 시 마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4. 계약 해지	가. 동일 경고 3회